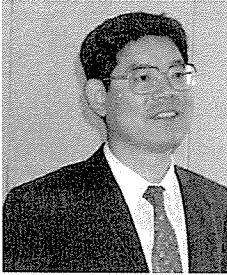


“과학기술자의 가치관 정립을”



金周德
(부장검사/대검찰청 환경과장)

과학기술은 그 개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인류사회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 협조함으로써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과학기술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가치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규범성의 문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 분야별로 너무 전문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문인 상호간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최근 그 발달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조인 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가 어려워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지구상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활용방법을 개발하고 생활방식을 개선해 나가며 우주까지도 정복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무한경쟁시대의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보다 뒤지지 않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은 고도로 향상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각종 편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가치 규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치중립적이고 무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개발된 이후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과학자의 피나는 노력에 의하여 개발된 핵은 생산과정에 사용되면 상당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핵이 전쟁 등에 있어서 인류 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이른바 핵무기라는 가공할 파괴력

을 지닌 파멸수단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 발달의 결과, 장거리통신 또는 이동통신제도 등이 놀랄 정도로 발달되어 영상 국제회의도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기구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청장치로 사용되어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도청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돈을 받아오던 범죄조직이 검찰에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의 악용 내지 오용은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연구과정에 있어서 가치지향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추구해야 할 가치

그러면 과학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가?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물리화학적 법칙을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원리와 기술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 가치를 상정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결국 그의 개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개발만 추구한다면 사회적으로 나아가 인류에 대한 커다란 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사회는 국가간의 국경을 넘어 서로 협조함으로써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지구환경문

제만 보더라도 근래 문제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현상, 기후온난화, 열대림의 파괴와 사막화현상 그리고 해양오염, 생물종의 감소 등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인류 전체가 합심하여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이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대처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점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따라 종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복잡한 법률문제가 민·형사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그동안 법은 주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사실상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사회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사문제와 개인간의 재산상의 분쟁문제를 다루는 민사문제, 가정과 친족간의 가사문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발전에 따라 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술개발에 따른 발명특허권의 보장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산업기술의 도용에 의한 침해행위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컴퓨터범죄, 컬러복사기에 의한 지폐위조행위, 신용카드의 위조사용범죄, 전화도청행위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범죄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과학기술의 개발성공을 범죄인들이 지능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신종범

죄 수법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신용카드의 자석 띠에 들어있는 개인별 암호를 해독하여 신용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낸 지능범죄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수법의 발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신종범죄수법을 분석·연구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에는 과학수사지도과, 과학수사운영과, 전산담당관실이 각종 과학수사분야에 대한 연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의 바램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결과가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에 사용되는 현상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과학기술분야에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장비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탐지기, 전화 감청장치, 유전자감식법, 기타 법의학적인 연구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되어 범죄의 방지와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기술의 개발이 있으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추적방법 등을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점차 절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개발이 인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만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인류전체가 파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여러가지 첨단장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는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측정결과는 완전한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대부분의 증거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학적 수사장비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그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자들이 이러한 과학수사장비의 개발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롭고 효과적이며 정확한 수사장비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볼 때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욱이 과학적인 수사장비에 의하여 범죄인을 쉽게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범죄를 상당수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의 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㉞